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0. 12. 16(목)
산 업 위 원 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 2010. 10. 19
- 나. 제안자 : 김정현, 김영분, 허회숙 의원외 18인
- 다. 회부일자 : 2010. 10. 19
- 라. 상정일자 : 2010. 12. 7(제189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위원회)
 - 제안설명 : 인천광역시의회 김정현 의원
 - 검토보고 : 산업전문위원 김복기
 - 질의 및 토론
 - 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에서의 생활오수처리에 대한 책임이 개인에게 있음에 따라 개인오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물론 관리비의 부담도 있음.
- 이에 따라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의 개인오수처리시설의 경우 설치 이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아 수질오염을 유발시킴은 물론 오염된 물이 바다로 흘러들어감에 따라 해양수질 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음.
-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 별표 1 제1호에서 규정하는 단독주택의 개인오수처리시설에 대하여 관리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하수관거 정비구역으로 공고한 지역 외 단독주택(「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 별표 1 제1호에서 규정하는 단독주택)의 개인오수처리시설에 대하여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관리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2)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 하수도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하수도의 설치·관리를 통하여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하수 및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할 책무가 있어 본 개정조례안의 규정에 따라 관리비를 지원할 경우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의무 지역의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비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시설의 운영을 적정하게 유도하고, 공공수역의 수질보전과 공중위생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의 규정에는 오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로 1일 오수발생량에 따라 오수처리시설 또는 정화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조례안에는 건축법상 단독주택에 오수처리시설이 설치된 경우만 지원하도록 하고 있어 단독주택이면서 정화조 시설이 설치된 경우 또는 공동주택 등 단독주택 이외의 건축물에 오수처리시설 또는 정화조시설이 설치된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바,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또한, 하수처리구역의 경우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사람은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2조(공공하수도 사용료)에 따라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납부하고 있는 바, 공공하수도 사용료와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비에 대한 비교와 지원에 대한 형평성 문제 등도 검토가 요구되며

- 관리비를 지원할 경우 예산소요가 불가피한 바, 관리비의 범위, 지원 기준 등과 이에 따른 예산 확보방안, 관리비 지원 후 사후관리에 대한 대책마련이 요구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질 의 >

- 이한구 위원
 - 개인오수처리시설을 개인하수처리시설로 하는것이 타당한지?
 -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의 상수도 사용자도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하는지?
- 윤재상 위원
 - 관리비의 범위에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처리비(청소)도 포함되는지?

< 답 변 >

- 환경녹지국장 이상익
 - 개인오수처리시설을 개인하수처리시설로 하면 정화조까지 포함되어 타당하다고 판단됨.
 -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의 상수도 사용자도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음.
 - 관리비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을 시행규칙에 정하도록 하며 처리비도 포함하여 검토하겠음.
- 김정현 의원
 - 개인오수처리시설을 개인하수처리시설로 하는 것이 타당함.

5. 토론요지

가. 찬 성 : 없음.

나. 반 대 : 전용철·조영홍·김정현·구재용·김영분·윤재상·이한구·허인환 위원

※ 조례안 제11조의2 “오수”를 “하수”로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

6. 수정안 요지

- 조례안 제11조의2 “오수”를 “하수”로 한다.

7.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전원 찬성 : 8명)

8. 기타특이사항

- 없 음

- 붙임 1. 수정안 1부.
2. 수정안 대비표 1부.
3.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4.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1조2 중 “오수”를 “하수”로 한다.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개인하수처리시설 지원) 시장은 법 제34조에 따라 하수관거 정비 구역으로 공고한 지역 외 단독주택(「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 별표 1 제1호에서 규정하는 단독주택)의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관리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data-bbox="193 528 360 566"><신 설></p>	<p data-bbox="836 528 1430 1160">제11조의2(개인하수처리시설 지원) 시장은 법 제34조에 따라 하수관거 정비구역으로 공고한 지역 외 단독주택(「건축법시행령」 제3조의 4 별표 1 제1호에서 규정하는 단독 주택)의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관리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p>